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

가. 문제 출제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2,200 원 → 2,300 원
- 주관식(1과목위원당) 40,000 원 → 45,000 원

나. 문제 채점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40 원 → 22 원
- 주관식(10부까지 기본료) 22,000 원 → 25,000 원

다. 면접(실기)시험수당(6급이하)	10,000 원 → 15,000 원
라. 문제편집수당(일당)	6,000 원 → 7,000 원
마. 문제선정심의수당(과목당)	30,000 원 → 35,000 원
바. 감시 수당(일당)	
- 공 휴 일	9,000 원 → 10,000 원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 및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등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문제출제수당, 채점수당,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, 문제편집수당, 문제선정심의수당, 감시수당 등의 수당지급기준액을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줄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